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찬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3
----------	------

발의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발 의 자 : 주찬식 의원(1명)

찬 성 자 : 이상묵, 성백진, 김진영,
송재형, 신건택, 황준환,
이숙자, 김진수, 김춘수,
남재경, 박마루 의원(11명)

1. 제안이유

현행 조례 중 상위법과의 불일치하는 규정과 중복 규정 등을 정리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관련 상위법(「하수도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 정비함.(안 제3조, 안 제34조제1항제5호, 안 제39조제1항제1호)

나.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시(2008. 7. 30.)

정비 누락된 조항을 정비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별첨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공하수도에 의하여”를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오수하수도”를 “오수관로”로, “도관(도관)”을 “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외지(제외지)”를 “제외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차집관거”를 “차집관로”로, “청천시의”를 “청천 시의”로, “우천시”를 “우천 시”로, “관거”를 “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재축(재축)”을 “재축”으로 한다.

제3조 본문의 “법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를 “법 제15조제2항”으로,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를 “공공하수관로”로, “30m이내”를 “직선거리 30m 이내”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다목 중 “차집관거”를 “차집관로”로,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행규칙”을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다목 중 “차집관거”를 “차집관로”로,

같은 호 라목 중 “900mm이상”을 “900mm 이상”으로, “0.7m²이상 하수관거”를 “0.7m² 이상 하수관로”로, 같은 호 마목 중 “모터펌프”를 “모터펌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 “900mm미만”을 “900mm 미만”으로, “0.7m²미만 하수관거”를 “0.7m² 미만 하수관로”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0.7m²이상 하수관거”를 “0.7m² 이상 하수관로”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하수관거 준설 등”을 “하수관로 준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관거”를 “관로”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삭제<2011.7.28.>관리청은”을 “관리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규정을 준용하여”를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합산한 금액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신청시”를 “신청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검사신청서”를 “준공검사 신청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제22조제2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징수한다.다만,”을 “징수한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하수도법”을 “법”으로 한다.

제24조제2호 중 “각호”를 “각 호”로, “본다.다만,”을 “본다.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 “수도급수량”을 “수도 급수량”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있다.다만,”을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사용개시신고”를 “사용개시 신고”로,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수한다.다만,”을 “징수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영”을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따른다.다만,”을 “따른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가목 중 “인·허가시”를 “인·허가 시”로, “개산(개산)액”을 “개산액”으로, “준공신청시”를 “준공신청 시”로, “부과하며,,”를 “부과하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준공시”를 “준공 시”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부과한다.다만 하수관거”를 “부과한다. 다만, 하수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공공하수관거”를 각각 “공공하수관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승인시”를 “승인 시”로, “징수(납부)한다.다만”을 “징수(납부)한다. 다만,”으로, “준공전”을 “준공 전”으로, “준공시”를 “준공 시”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별표7”을 “별표 7”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한다.다만,”을 “징수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익일”을 “다음 날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월력(월력)”을 “월력”으로 한다.

제33조의2 본문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5호의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 각 호 중 “차집관거”를 각각 “차집관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사용자”란 <u>공공하수도에 의하여</u>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5. “<u>오수하수도</u>”란 오수만을 배출 또는 처리하기 위한 <u>도관(도관)</u>·공작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p> <p>6. “<u>빗물펌프장</u>”란 빗물을 <u>제외지<제외지></u>·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에 강제 배수시키는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p> <p>7. “<u>차집관거</u>”란 <u>청천시의</u> 하수와 <u>우천시</u>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u>관거</u>를 말한다.</p> <p>8. (생략)</p> <p>9. “개량”이란 하수도의 전면보수·<u>재축(재축)</u>·확장 또는 증설</p>	<p>제2조(정의)----- ----- -----.</p> <p>1. ----- <u>공공하수도를 이 용하여</u> ----- ----- ----- -----.</p> <p>2. ~ 4. (현행과 같음)</p> <p>5. “<u>오수관로</u>”란----- -----<u>관</u>----- ----- -----.</p> <p>6. -----<u>제외지</u>----- ----- ----- -----.</p> <p>7. “<u>차집관로</u>”--<u>청천 시의</u>---- --<u>우천 시</u>----- ----- -----<u>관로</u>-----.</p> <p>8. (현행과 같음)</p> <p>9. ----- --<u>재축</u>-----</p>

현행	개정안
<p>하는 것을 말한다.</p> <p>10. ~ 12. (생략)</p> <p>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u>법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u> (이하 “<u>시행규칙</u>”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u>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u>로부터 <u>30m이내</u>로 한다.</p> <p>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① (생략)</p> <p>1. (생략)</p> <p>가. ~ 나. (생략)</p> <p>다. <u>차집관거</u>(중계펌프장·우수토실 포함)</p> <p>2. (생략)</p> <p>가. <u>하수관거</u>(중계펌프장 포함)</p> <p>나. ~ 다. (생략)</p> <p>② (생략)</p> <p>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u>시행규칙</u>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생략)</p> <p>가. ~ 나. (생략)</p>	<p>-----.</p> <p>10. ~ 12. (현행과 같음)</p> <p>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u>법제15조제2항</u>-----</p> <p>-----</p> <p>-----</p> <p>-----<u>공공하수관로</u>-----</p> <p>---<u>직선거리 30m 이내</u>---.</p> <p>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u>차집관로</u>-----</p> <p>-----</p> <p>2. (현행과 같음)</p> <p>가. <u>하수관로</u>-----</p> <p>나. ~다.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u>「하수도법 시행규칙」</u> (이하 “<u>시행규칙</u>”이라 한다.)-----</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다. <u>차집관거</u>(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p> <p>라. 내경 <u>900mm 이상</u> 또는 통수단면적 <u>0.7m² 이상 하</u> <u>수관거</u>(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비</p> <p>마. 빗물펌프장의 설치·개량 및 <u>모터펌프</u> 교체비</p> <p>바. (생략)</p> <p>2. (생략)</p> <p>가. 내경 <u>900mm 미만</u> 또는 통수 단면적 <u>0.7m² 미만 하</u> <u>수관거</u>(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p> <p>나. 내경 900mm 이상 또는 통수 단면적 <u>0.7m² 이상 하</u> <u>수관거</u>(중계펌프장 포함)의 수선 및 유지관리</p> <p>다. ~ 라.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관리의 특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경계에 따라 설치된 공공하수도는 도로 또는 하상을 관리하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공공하수도 설치지역과 수혜구가 다른 경우</p>	<p>다. <u>차집관로</u>----- ----- -----</p> <p>라. -----<u>900mm 이상</u>----- -----<u>0.7m² 이상 하</u> <u>수 관 로</u>----- -----</p> <p>마. ----- -----<u>모터펌프</u>-----</p> <p>바.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u>900mm 미만</u>----- -----<u>0.7m² 미만 하</u> <u>수 관 로</u>----- -----</p> <p>나. ----- -----<u>0.7m² 이상 하</u> <u>수 관 로</u>----- -----</p> <p>다. ~ 라.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관리의 특례)----- ----- ----- ----- ----- -----</p>

현 행	개 정 안
<p>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혜를 많이 받은 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되, 그 관리구분은 <u>별표1</u>에 의한다.</p> <p>제7조(<u>하수관거 준설 등</u>) ① 관리청은 <u>하수관거</u>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악취 및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u>하수관거</u>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p> <p>② <u>하수관거</u>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적물의 상황 및 <u>관거</u>의 상태에 따라 구간별로 실시 여부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p> <p>제8조(<u>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신청</u>)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u>인가신청서</u>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u> 2. <u>사업 목적</u> 3. <u>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u> 4. <u>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용량 및 규격·재질</u> 	<p>----- ----- -----<u>별표 1</u>-----.</p> <p>제7조(<u>하수관로 준설 등</u>) ① ----- -----<u>하수관로</u>----- ----- -----<u>하수관로</u>-----.</p> <p>② <u>하수관로</u>----- ----- ----- -----<u>관로</u>----- ----- -----.</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5. <u>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 처리구역</u></p> <p>6. <u>사업시행기간</u></p> <p>7. <u>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u></p> <p>② <u>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면과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u></p> <p>1. <u>사업시행지의 위치도와 그 인근지역의 지형을 표시한 하수관망도</u></p> <p>2. <u>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u></p> <p>3. <u>하수관 설치 및 개량 등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관련 서류</u></p> <p>4. <u>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u></p> <p>제9조(인가내용의 고시) <u>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인가한</u></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u>때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u></p> <p>제14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배수설비 설치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u>한다.다만</u>, 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 ③ (생략)</p> <p>제15조(배수설비 설치공사의 대행) ① 관리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개조 또는 수선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p>	<p>제14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 ----- ----- -----<u>한다. 다만,</u>-----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16조(공사비)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대행을 신청하는 배수설비 설치자는 그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에 대한 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제17조(공사비의 선납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대행을 신청하는 배수설비 설치자는 공사비의 개산액을 그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이를 정산하며,</p>	<p><삭제></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u>정산결과 과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u> <u>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납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u>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대행을 신청한 배수설비 설치자가 동 신청을 철회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계비 및 철회 시까지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한다.</u></p> <p>제18조(관리청의 공사시행) ① <u>삭제<2011.7.28.>관리청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 2. (생략)</p> <p>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을 당해 배수설비 설치의 무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u>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규정을 준용하여</u> 법 제73조에서 정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p>	<p>제18조(관리청의 공사시행) ① <u>관리청은</u>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 ----- -----<u>공사</u> <u>의 시행에 필요한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소요비</u></p>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u>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u></p> <p>3. <u>제15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청</u></p> <p>4. (생략)</p>	<p>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u></p> <p><삭제></p> <p>4. (현행과 같음)</p>
<p>제22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생략)</p> <p>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u>한다.다만,</u>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하여도 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없고 주변 환경저해 등에 문제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2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한다. 다만,</u> ----- ----- ----- ----- -----.</p>
<p>제23조(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u>징수한다.다만,</u> 빗물</p>	<p>제23조(사용료) ① ----- ----- ----- ----- ----- ----- ----- ----- -----<u>징수한다. 다만,</u>-----</p>

현 행	개 정 안
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월 60m ³ 미만인 유출지하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하수도법</u> 제15조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를 통해 공고한 설계유입수질 초과	3. <u>법</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생략)	제2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u>각호</u> 에 따른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u>본다.다만</u> ,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계측기에 의한 검침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 ----- ----- <u>각 호</u> ----- ----- <u>본다. 다만</u>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u>수도급수량</u> 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 ----- ----- <u>수도급수량</u> ----- ----- -----

현 행	개 정 안
<p>으로 산정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u>한다.다만</u>,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하되,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액으로 산정한다.</p>	<p>----- -----<u>한다. 다만,</u>----- ----- -----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에 의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산정하여 <u>징수한다.다만</u>,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점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 ----- ----- ----- ----- -----<u>징수한다. 다만,</u>----- ----- ----- ----- -----.</p>
<p>⑤ (생략)</p>	<p>⑤ (현행과 같음)</p>
<p>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략)</p>	<p>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p>
<p>1. 오수발생량은 <u>영</u>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p>	<p>1. ----- 「<u>하수도법 시행령</u>」 ----- (<u>이하 “영” 이라 한다.</u>)----- ----- -----.</p>
<p>2. 별표 5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u>따른다.다만</u>, 중</p>	<p>2. ----- ----- -----<u>따른다. 다만,</u>-----</p>

현 행	개 정 안
<p>수도를 설치한 경우는 전체 오수발생량에서 그 설치요량 만큼 공제한다.</p>	<p>----- ----- -----.</p>
<p>3. ~ 6. (생략)</p>	<p>3. ~ 6. (현행과 같음)</p>
<p>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u>인·허가</u>시 그 <u>개산(개산)액</u>을 통보하고 <u>준공신청시</u> (임시사용승인 포함)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u>부과하며</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p>	<p>가. ----- ----- ----- <u>인·허가 시</u>-----<u>개산액</u> -----<u>준공신청 시</u> ----- -----<u>부과하</u> <u>며</u>, ----- -----.</p>
<p>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u>준공시</u>에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또는 승인 시에 한다.</p>	<p>나. ----- <u>준공 시</u>-----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u>하수관거</u> 설치</p>	<p>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 ----- ----- ----- ----- ----- -----<u>하수관로</u>-----</p>

현행	개정안
<p>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u>부과한다.다만 하수관거</u>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u>하수관거</u>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u>공공하수관거</u>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u>하수관거</u>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u>공공하수관거</u>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u>승인시</u> 그 개산액을 통보하되, 제29조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준용하여 <u>징수(납부)한다.다만</u> 제29조를 준용하지 아니할 경우 개산액을 <u>준공전</u> 분할 납부토록 하되 <u>준공시</u>에 정산 징수(납부)한다.</p> <p>제32조(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① (생략)</p> <p>1. ~ 2. (생략)</p> <p>3.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각</p>	<p>----- <u>부과한다. 다만, 하수관로</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하수관로</u>----- ----- -----<u>공공하수관로</u>----- -----<u>하수관로</u>----- ----- -----<u>공공하수관로</u>----- ----- -----.</p> <p>④ ----- -----<u>승인시</u>----- ----- ----- ----- -----<u>징수(납부)한다. 다만,</u>----- ----- -----<u>준공 전</u>-----<u>준공</u> <u>시</u>-----.</p> <p>제32조(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p>

현행	개정안
<p>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p> <p>1. 연체금 = 미납요금×3/100×(연체일수/월력(월력)일수)</p> <p>② ~ ③ (생략)</p> <p>제33조의2(소멸시효) ①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u>한다.다만,</u>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p> <p>제34조(감면) ① (생략)</p> <p>1. ~ 4. (생략)</p> <p>5.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5<u>조에</u>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p> <p>6. ~ 9. (생략)</p> <p>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u>한다.다만,</u> 시장은 도로 등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p>	<p>----- -----.</p> <p>1. ----- -----<u>월력</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3조의2(소멸시효) ① ----- ----- ----- -----<u>한다. 다만,</u> ----- ----- ----- -----</p> <p>제34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 -----</p> <p>6. ~ 9. (현행과 같음)</p> <p>② ----- ----- ----- -----<u>한다. 다만,</u>----- -----</p>

현행	개정안
<p>감면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원으로 감면할 수 있다.</p>	<p>----- ----- ----- -----.</p>
<p>③ ~ ⑤ (생략)</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38조(사용의 제한) ① (생략)</p>	<p>제38조(사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히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p>	<p>② ----- ----- ----- ----- ----- ----- 한다. 다만,----- ----- ----- ----- ----- -----.</p>
<p>제39조(사무의 위임) ① (생략)</p>	<p>제39조(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p>
<p>1. <u>제10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 신고의 접수 및 확인, 조사</u></p> <p>2. ~ 6. (생략)</p> <p>7. 제28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물재생시설 및 <u>차집관</u></p>	<p><삭제></p> <p>2. ~ 6. (현행과 같음)</p> <p>7. ----- -----<u>차집관</u></p>

현행	개정안
<p><u>거</u> 관련사항 제외)</p> <p>8. ~ 15. (생략)</p> <p>② (생략)</p> <p>1. ~ 4. (생략)</p> <p>5.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하수, 물재생시설 및 <u>차집관거</u> 관련사항 제외)</p> <p>6. (생략)</p> <p>③ (생략)</p> <p>1. 제28조에 따른 점용료 중 물재생시설 및 <u>차집관거</u>와 관련된 점용료의 부과·징수</p> <p>2.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중 물재생시설 및 <u>차집관거</u>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p>	<p><u>로</u>-----</p> <p>8. ~ 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p> <p><u>차집관로</u>-----</p> <p>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 -----<u>차집관로</u>----- -----</p> <p>2. ----- -----<u>차집관로</u>----- -----</p>

[별첨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원 주찬식